商標登録無効

〈大法院 第1部 判決〉(1989. 4. 11)

事件番號：87후 19
裁 判 長：윤　관
關與法官：김 덕 주 · 안 우 만 · 배 만 운

1. **審判請求人(上告人)**：천 태 완(한일전기(주) 대표)
2. **被審判請求人(被上告人)**：한 현 수(한일스텐레스스틸공업(주) 대표)
3. **原 審 決**：特許廳 抗告審判所 1986. 12. 31字 1983年 抗告審判(當) 第287號
4. **主　文**：上告를 기각한다. 上告費用은 審判請求人의 부담으로 한다.

5. 理　由：

上告理由를 본다.

原審決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審判請求人들은 1969. 3. 16부터 본건 登錄商標의 갱신出願日 이전까지 약4년간 190회에 걸쳐 일간 신문에 審判請求人들의 제품과 引用標章을 광고 선전하였고 또한 審判請求人들의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引用標章 및 제품의 사용기간, 방법, 배양, 사용량 거래범위 및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같은 사실만으로는 審判請求人들의 引用標章이나 제품들이 被審判請求人의 본건 登錄商標 出願당시 이미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 著名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商標登錄無效 審判請求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과 判斷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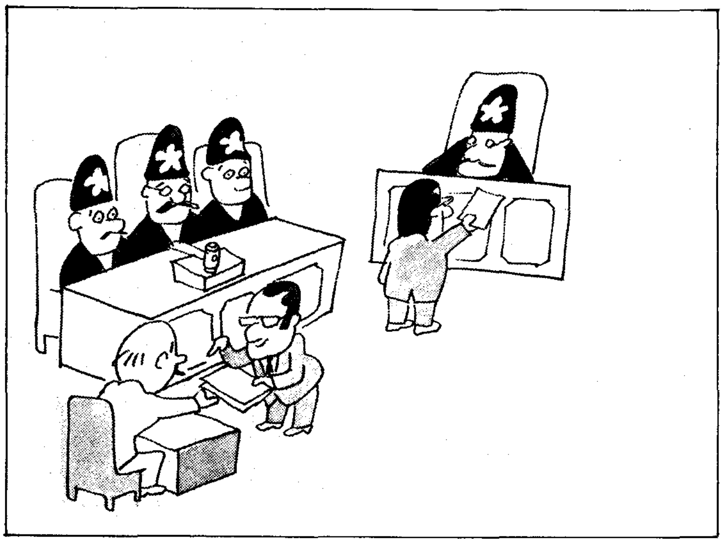

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費用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